

Goal 5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정금나

I. 목표(Goal)의 의미

1. 설정 배경

2014년 7월 제출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s, OWG)의 SDGs 초안에서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이슈는 17개 목표 중 5번째 독자목표(Stand-alone) 인 동시에 다른 10개 목표의 세부목표로서 광범위하게(Cross-cutting) 반영되어 있다. 젠더 이슈가 빈곤, 교육, 보건, 농업 등 단일 목표로 제시되어 있는 여타의 SDGs 주제와 달리 독자목표와 범분야 세부목표인 이중 구조로 설계된 데에는 MDGs 설정과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달성의 한계점에 대한 국제기구와 여성계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반영된 것이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2013-2014)에 의하면, MDGs 목표 중 일부는 이미 달성되었거나 2015년까지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에서 절대빈곤층의 규모는 1990년 대비 2010년에 절반으로 감소하였고(하루 1.25달러 이하 소득 생활자 47%→22%), 1990년 이후 21억 명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말라리아와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도 크게 감소되었다.

하지만 MDGs내 일부 목표의 월등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 목표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분야도 있는데, 아쉽게도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분야에서 이러한 취약성이 현저하다. 가령, 지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산모 사망률은 47% 감소하였지만, 3/4까지 감소시킨다는 목표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2012년 인구대비 고용율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비격차는 24.8%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50%에 근접할 정도로 성비 격차가 높다. 또한 1990년 이래 성인 문해율은 월등하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여성은 전세계 성인 문맹자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의회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은 20.4%에 그치고 있다 (유엔새천년개발보고서 2013).

이전의 많은 국제규약, 결의안, 협약, 법규정과 달리 2015년이라는 달성 기한을 세우고,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성과를 모니터링을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MDGs내 8개 목표달성에 협력하여 빈곤철폐와 개발협력 분야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큰 의미를 가진다(UN 2013:2). 또한 MDGs 목표 설정 당시 성차별적 제도와 관습이 여성권리 실현과 개발목표 달성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을 인식하여 MDGs 목표 내에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독자목표(Goal 3)와 일부 목표의 세부목표로 반영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MDGs는 성차별을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 그 자체를 다루지 않고, 성평등과 여성역

〈표 5.1〉 MDGs 내의 성평등 관련 목표 및 지표^{1),2)}

목표(Goal)	세부목표(Target)		지표(Indicator)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1.B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일다운 일자리(decent work)”를 제공한다.	15. 인구대비 여성과 남성의 고용율
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2.A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이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2.3. 전 세계 15-24세 여성과 남성의 문해율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3.A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 성에 따른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평등을 이룬다.	3.1. 초·등·고등교육 여성과 남성 등록률
			3.2. 비농업분야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
			3.3. 의회(상원·하원)내 여성의원 비율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5.A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까지 감소시킨다.	5.1. 산모 사망률
			5.2.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출산한 신생아 비율
	5.B	2015년까지 산모들이 보편적인 의료혜택을 받게 한다.	5.3. 피임율
			5.4. 십대 청소년 출산률
			5.5. 산전 진료(권장횟수인 총 4회중 최소 1회 이상)
			5.6. 가족계획을 원하지만 그 요구가 충족되고 있지 않은 여성 비율

출처: 저자 작성

량강화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반영했어야 할 중요한 세부목표와 지표들을 제외함으로써 성차별을 충분히 개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여성계는 MDGs에서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분야 목표달성률이 낮은 이유로 성차별을 야기시키는 주요 원인과 여성이 처한 심각한 과제들을 다루지 않고 제한적인 개별 과제 중심으로 MDGs 목표가 설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가령, 전 세계 여성 중 35%가 일생 동안 한번 이상 성폭력을 겪고 있고, 매일 4천명의 15세 미만 여아들이 조혼 문화로 결혼을 하고, 어린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산모 사망률을 1990년 대비 3/4까지 감소시킨다는 MDGs 목표는 쉬운 달성 과제로 보이지 않는다(UN

1) MDGs 목표/세부목표/지표는 2001년 UN총회 채택 당시 목표(Goal) 8개+세부목표(Targets) 21개+지표(Indicators) 48개 였으나, 2007년 UN총회에서 세부목표 3개+지표 12개 추가 승인됨. 아래 표는 2008년 1월 배포된 Official list of MDG indicators를 기준으로 사용하였음(<http://mdgs.un.org/unsd/mdg>).

2) 목표 및 세부목표에 사용된 용어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어판(2013-2014)」을 참조하였다.

ECOSOC 2014:32, Gaelle Ferrant 외 2015:3). 또한 절대빈곤과 기아퇴치를 MDGs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지만, 개발도상국 농업과 경제활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재산소유권, 자원 접근권, 재정 지원 및 금융제도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지표만으로 MDGs 목표1을 평가하는 것은 성평등 달성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성취하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이다.

MDGs에 대한 이러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국제기구와 시민단체, 여성 전문가 집단은 Post-2015 SDGs의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원칙으로서 차별의 원인과 구조 개혁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SDGs내에 성평등을 독자 목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별 목표에 반영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할 것과 사회/경제/환경 이슈를 조화롭게 고려한 인권에 기반한 목표를 원칙으로 제시하였다(UN Women 2013, 김은경 외 2014).

2. 개발협력 분야에서 성평등의 의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Post-2015 종합보고서를 통해 SDGs 목표달성을 향한 원칙으로서 “Leave no one behind”를 제시하면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집단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특히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로서, 인류의 절반인 여성이 전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을 때 인류 전체의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UN 2014:14).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의 원칙은 Post-2015 지속가능한 개발의 시발점인 Rio+20 문서에도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2012년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회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전면적이고 평등한 참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³⁾과 북경행동강령, 그리고 MDGs에 반영되어 있는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목표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다짐하였다(UN 2012).

MDGs와 마찬가지로 SDGs에서 첫 번째 목표는 빈곤철폐이다. 빈곤 철폐 없이 지속가능한 개발은 달성할 수 없다. 하지만 빈곤철폐 만큼이나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중요한 목표는

3) 1979년에 제정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협약)은 국제인권법 체제하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작동하고 있는 핵심 인권조약 중의 하나로 여성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CEDAW협약은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하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적인 법, 규정, 관습, 관행을 없앨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다. 또 국가기관이나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차별과 폭력은 물론 어떠한 개인, 단체, 기업에 의한 행위도 방지할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있다(신혜수 2010).

정의와 평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향유이다. 어느 누구도 전쟁 속에서 폭력을 겪으며, 불안과 부정의 속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향유할 수 없다(UN 2013:3). 하지만 전 세계 여성의 35%는 일생에서 한번 이상 성폭력을 겪고 있고, 약 1억4천만 명의 여성들이 성기절제(FGM/C)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매일 800여명의 여성이 예방 가능한 임신과 출산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고, 전쟁 중 강간과 살인, 조혼과 인신매매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UN Technical Support Team 2014:216; OECD 2014b).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평등의 달성은 지속가능한 개발이 지향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인 포용적이고 개혁적인 인간개발, 굿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평화와 환경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과제이다. 성평등은 빈곤감소와 경제성장, 민주주의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자동적으로 여성과 여아의 권리 실현과 성평등 실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UN Technical Support Team 2014:219).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자원의 투입, 그리고 정책과 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성차별은 여성과 여아에게만 차별과 악습의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개발비용과 개발효과성 저해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발기구들의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조혼, 어린이 결혼이 만연한 국가들은 남아 100명당 60명의 여아만이 중등교육을 마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남성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시간을 무임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에 쓰는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할 때 평균적으로 남성의 65%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여성이 낮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산모사망률, 질병치사율, 그리고 낮은 기대수명을 보이고 있다(Ferrant et al. 2015).

성차별은 다양한 차별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에 만연화되어 있는 차별로서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 소득, 지역, 인종, 민족, 성(sexuality), 나이, 장애 등에 영향을 주어 사회 내 다층적인 불평등을 야기시킨다(UN Women 2013:11). 성평등, 그리고 여성과 여아의 완전한 참여를 제외하고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성평등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철폐를 위한 개발협력분야의 수단이자 목표로 수행되어야 한다.

II. 목표(Goal)별 분석

1. 목표의 논리구조

SDGs에서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는 9개의 세부목표를 가진 SDGs 5번째 독자목표이자 다

른 10개 목표 안의 세부 목표(Target)에 반영된 이중구조(Twin-track)로 설정되어 있다.

UN Women(2013)은 이러한 이중전략 접근에 대해 (1) 성차별적인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여성폭력, 성적·재생산 권리, 여성의 경제권 및 역량 강화 등 심각하고 급박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독자 목표가 필요할 뿐 아니라 (2) 빈곤, 보건, 교육,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른 위치와 집단에 속한 여성과 남성들의 실질적인 평등 보장을 위해서 성평등에 기반한 젠더 분석이 유효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범분야 접근이 필요하며 (3) 독자적 목표와 범분야 목표, 그리고 각각의 목표에 따른 세부 지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달성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평가한다(UN Women 2013:11).

〈표 5.2〉 SDGs 목표 5. 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 역량강화

목표(Goal)	세부목표(Target)
Goal 5. 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 역량강화	5.1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5.2 공적 및 사적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인신매매, 성 착취 및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5.3 아동결혼, 조혼, 강제결혼 및 여성 성기절제 등 모든 악습 철폐
	5.4 공공서비스, 인프라, 사회보장정책의 제공, 그리고 가구와 가족 내 공동의 책임 도모를 통한 무급 및 가사노동 가치 인정
	5.5 정치, 경제, 공공생활의 모든 의사결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동등한 리더십 기회 보장
	5.6 국제인구개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와 북경 행동강령에 부합하는 성적, 재생산 보건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모든 사람의 동등한 접근 보장
	5.a 여성에게 법이 보장하는 경제적 자원, 토지, 자산, 재정서비스, 상속 및 자연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주기 위한 개혁 수행
	5.b 여성역량강화를 위해 ICT를 포함한 기술사용의 확대
	5.c 모든 수준에서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및 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건전한 정책과 강제력 있는 법안의 채택과 강화

출처: Open Working Group(2014)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focussdgs.html>

〈표 5.3〉 SDGs 10개 목표 내에 범분야 이슈로 반영된 젠더 세부목표

목표(Goal)	세부목표(Target)
Goal 1. 빈곤퇴치	1.2 2030년까지 빈곤한 모든 연령대의 남성, 여성, 어린이의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
Goal 2.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2.2 2030년까지 모든 영양결핍 해소 및 청소년기 여성, 산모, 수유기 여성 및 노인의 영양적 필요에 대처
	2.3 2030년까지 땅, 생산자원, 지식, 재정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비농업 고용기회 제공을 통한 여성, 원주민, 가족농, 유목민, 어부 등 소규모 식량생산자의 생산성과 임금을 두 배 증가
Goal 3. 보건증진	3.1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모 사망률을 100,000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Goal 4.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4.1 2030년까지 모든 소녀와 소년들이 무상의 평등하고 양질의 초등, 중등교육을 완료
	4.2 2030년까지 모든 남녀 유아들이 적절한 돌봄과 취학전 교육을 통해 초등교육 진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양질의 기술, 직업,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의 동등한 접근성 확보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격차를 철폐하고 모든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장애인, 원주민, 아동 등 취약계층의 동등한 접근성 확보
	4.6 2030년까지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모든 청년 및 X%의 성인의 문해력/수학적 능력 확보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인권, 양성평등, 비폭력, 글로벌시민권, 다양성 등 관련 지식과 기술 습득할 수 있도록 보장
	4.a 아동, 장애, 성인지적 교육시설의 건설 및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제공
Goal 6. 물과 위생	6.3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절하고 공평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보,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 척결, 여성과 여아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촉구
Goal 8. 경제성장과 일자리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기회 및 일다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등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 보장
	8.8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불안정 고용에 처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노동 환경 보장 및 노동권 보호
Goal 10. 불평등 해소	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적 또는 어떠한 지위에 관계없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부여
Goal 11. 도시	11.2 2030년까지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특별한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대중교통 확대 및 도로안전 개선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안전하고 지불가능하고 접근성 높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의 제공
	11.7 2030년까지 여성과 어린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포함하여 모든 이들에게 안전하고 통합적이며 접근성 좋은 공공복지 공간을 제공
Goal 13. 기후변화와 대응	13.b LDCs의 여성, 청년, 지방의 소외된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두면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과 경영을 위한 역량강화 매커니즘 설립
Goal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17.18 2020년까지 LDCs와 SIDS를 포함한 개도국에서 국가적 특성에 따른 소득수준,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 신분, 지역 등으로 분리된 양질의 시의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역량강화 증진

출처: Open Working Group(2014) 자료 저자 재구성

2.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본 목표체계 분석⁴⁾

2013년 UN Women은 MDGs 수행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북경행동강령에 기반하여 SDGs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독자목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우선분야로서 (1)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2) 능력과 자원 (3) 여성의 목소리, 리더십과 참여를 제시하였다. 이 세 가지 핵심 분야는 UN Women이 세계인권조약의 주요 원칙(보편성, 역행불가, 비차별, 지속가능한 평등), 연구조사, 여성운동 역사에서 얻은 교훈, 그리고 국가, 지역, 전 지구적 단위의 다양한 전문가 및 여성기구들과 나눈 토론과 자문에 기반한다(UN Women 2013:16).

UN Women이 제시한 3대 핵심 분야에 따라 SDGs 목표 5의 세부 목표를 분류해 보면, 세부목표 5.1/5.2/5.3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5.4/5.6/5.a/5.b는 능력과 자원, 그리고 5.5/5.c는 여성의 목소리, 리더십과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1) 세부목표 5.1/5.2/5.3: 성차별 철폐,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5.1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 제안된 지표 1: CEDAW 협약에 명시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법과 구조 철폐
- 제안된 지표 2: 여성과 여아에 대한 상속권 차별 철폐

5.2 공적 및 사적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인신매매, 성착취 및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 제안된 지표 1: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던 15-49세 여성과 여자청소년 중에서 현재 또는 전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
- 제안된 지표 2: 15-49세 여성과 여자 청소년 중에서 15세 이후에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가 아닌 사람에 의한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

5.3 아동결혼, 조혼, 강제결혼 및 여성 성기 절제 등 모든 악습 철폐

- 제안된 지표 1: 20-24세의 여성 중 18세 이전에 결혼했거나 동거관계를 경험한 여성의 비율(ex. 아동 결혼)
- 제안된 지표 2: 15-49세 여성 중 FGM/C(성기절제)를 겪은 여성 비율(관련국가 only)

4) 아래 각 세부목표 하단의 지표들은 UNSC에서 2015년 3월에 제안한 후보 지표군으로서 UN 단위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지표가 아니다. UNSC는 실현가능성(Feasibility), 지속성(Sustainability), 관련성(Relevance) 세가지 기준으로 각 지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SDGs 5. 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관련 지표들은 대부분 BBB-CBB(ABC 점수표)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면밀한 점검 및 대체 지표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UNSD는 2015년 5월 다양한 국제기구, 회원국,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SDGs 지표에 관한 의견을 접수받았으며, 동 내용은 2015.6월에 예정된 IAEG-SDGs(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http://unstats.un.org/sdgs/2015/05/29/first-proposed-priority-indicator-list/>).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국제인권법인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은 제1조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⁵⁾

특이하게도 CEDAW협약 전문이나 본문에 여성폭력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것은 협약이 기초되었던 1970년대 후반 당시에는 여성폭력의 문제가 아직 국제적 의제로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CEDAW 위원회는 1989년 일반권고 12호, 1992년 일반권고 19호를 채택하고 “성에 근거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차별의 한 형태”라고 규정하였다. 1993년 유엔 총회는 이 일반권고 제19호를 기초로 하여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채택하였다(신혜수 2015:8).

198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여성폭력이 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인식하고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전략과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3년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여성폭력철폐선언, 1995년 북경행동강령 주요 관심분야 D. 여성에 대한 폭력, 2000년 여아와 여성에 대한 성매매 처벌 관련의정서(일명 팔레르모 의정서, the Palermo Protocol), 2000년 채택된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등은 모두 여성폭력에 관련한 국제사회의 의지 표명과 여성폭력 근절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은경 외 2014:75-88). 또한 유엔총회는 인신매매, 여성 성기절제,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등을 포함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있다(UN ECOSOC 2014:32).

하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은 여전히 심각하며 모든 국가와 사회에 만연해 있다. 여성폭력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발생이 빈번한 형태는 가정폭력과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인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 여성 살해 피해자의 절반가량이 가족원 또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었다. 또한 여성과 여아는 전 세계 인신매매 피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ibid, p.33).

따라서 여성폭력철폐가 SDGs 세부목표에 포함되고 목표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설정된 것은 여성권리 실현에 있어 큰 의의를 지닌다. 현재 UNSC가 제시한 여성폭력철폐

5) 이 글에서 인용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관련 내용은 신혜수(2010),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선택의정서에 의한 여성인권보호”를 참조하였음.

폐 지표 후보군은 UN Women 등 여성계가 제안한 지표들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서비스에 대한 평가 지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야 한다. EU 28개 국가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여성의 1/3, 그리고 파트너가 아닌 사람에 의한 폭력 피해 여성의 1/4만이 경찰이나 지원서비스에 보고하고 지원받는다(UN ECOSOC 2014:33). 실질적인 여성폭력 철폐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 정책, 그리고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해 배정된 예산과 전문가 등 자원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2) 세부목표 5.4/5.6/5.a/5.b: 능력과 자원

5.4 공공서비스, 인프라, 사회보장정책의 제공, 그리고 가구와 가족내 공동의 책임 도모를 통한 무급 및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

- 제안된 지표 1: 성별, 연령별, 지역별 무급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에 사용된 주간 평균 시간량(5세 이상 인구층)
- 제안된 지표 2: 15분 이내의 거리에 식수원(water source)을 가진 가구의 비율

5.6 ICPD와 북경행동강령에 부합하는 성적, 재생산 보건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모든 사람의 동등한 접근 보장

- 제안된 지표 1: 성별, 지역별, 소득별, 장애여부 또는 개별국가에서 특수하게 고려해야 할 특성이 반영된 여성과 여아 계층이 자신의 성적, 재생산 권리에 대해 직접 의사결정을 한 비율
- 제안된 지표 2: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과 여자 청소년에게 그들의 성적, 재생산 건강과 권리 관련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지해야 할 법과 규정의 존재 유무

5.a 여성에게 법이 보장하는 경제적 자원, 토지, 자산, 재정서비스, 상속 및 자연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주기 위한 개혁 수행

- 제안된 지표 1: 성인 중 땅을 소유한 인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율
- 제안된 지표 2: 공식적인 금융기관 통장을 보유한 인구의 성별, 연령별 비율

5.b 여성역량강화를 위해 ICT를 포함한 기술사용의 확대

- 제안된 지표 1: 핸드폰을 보유한 인구의 성별 비율
- 제안된 지표 2: 다양한 ICT 기술 보유 능력 관련 성별 비율

MDGs 대한 여성계의 가장 큰 비판은 MDGs가 여아의 낮은 교육률, 높은 학교 중퇴율, 노동에서의 임금격차 및 근로 기회의 제한 등 성차별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인데, 특히 여성과 여아가 기본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적인 권리와 자원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개혁하지 못한 점은 MDGs의 한계로 지적된다.

UN Women이 SDGs 성평등 핵심 분야로 제시한 능력과 자원에 대한 접근방식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 개념⁶⁾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생존하고 활동(To be and To do)” 할 수 있고, 개인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먹을 것을 보장받고, 교육받고, 건강하게 살고, 결혼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다면 언제 몇 명이나 낳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본 권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이지만,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기본권이 거부되고 자신의 능력을 확대시킬 자원에의 접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UN Women 2013:25).

에티오피아 여성은 전체 농업 노동력의 45%를 차지하고 있지만, 토지나 기타 자산을 소유한 여성의 비율은 극히 미미하고, 많은 여성들이 신용대출 등 경제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OECD Development Centre 2010:3). 연구결과에 의하면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여성 중 5%만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여성의 5-30%, 그리고 남미의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25%만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UN Women 2012:18). 토지와 자산 소유권, 그리고 상속 권리는 경제적 안전성과 지속가능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권리이다.

개발현장에서 많은 경험과 연구결과는 여성들이 자원과 가구 경제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소유권이 확보될수록 가구내 의사결정권이 강해지며, 여성들은 소득을 가족들의 필요와 복지, 빈곤감소와 기아 극복에 사용한다고 증언한다(OECD Development Centre 2010:2).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개발도상국가 농업 노동력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농업기자재, 자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만 있더라도 식량 산출량이 34%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증산량은 전 세계 1억5천만 명의 영양부족 인구를 감소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UN Women 2014a).

경제권과 함께 여성과 여아의 몸에 대한 성적, 재생산 권리의 결여와 무임금 가사/돌봄 노동의 부담은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개발하는 것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

6) 센은 행복(well-being)을 소득, 재산, 효용, 자유, 기초재, 능력(capability) 등의 차원으로 확장하고, 특히 “능력의 차이”를 강조했다. 능력이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말한다. 센에 의하면 빈곤은 생존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여러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장상환 2009). http://eiec.kdi.re.kr/click/click/click_view.jsp?sendym=200912&idx=1115.

이 된다. 2015년 현재 전 세계 3천만 명이 넘는 여아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취학 연령의 32%는 중등교육에서 중퇴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조혼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전 세계에서 하루에 39,000명의 소녀들이 결혼하고 있다. 이중 1/3은 19세 미만이며, 15세 미만 여아들도 매일 4천명 이상 결혼하고 있다(Gaelle Ferrant 외 2015).

조혼과 임신·출산 외에도 여학생의 높은 교육 중도포기율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이슈로는 무임금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이 있다. 제49차 여성지위위원회(CSW) 연례회의(2005)와 54차 CSW 연례회의(2010)에서는 각각 북경행동강령의 10주년, 15주년 점검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전반에서 육아 정책과 서비스 부족이 여성의 경제적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여아와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지워진 가사노동의 부담은 여아의 학습 중도포기, 식수나 장작을 구해오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성폭력의 피해, 여성의 의사결정직으로의 진출이나 역량개발 기회를 제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김은경 외 2014:124).

2000년에 채택된 MDGs에서는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과 그로 인한 경제권 제한과 접근성 제약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계는 여성과 여아에게 불평등하게 지워진 가사 및 무임금 돌봄노동으로 인한 개발효과성 감소와 여성역량강화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SDGs 개발목표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UNESCO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물, 교통, 에너지와 같은 공공 인프라분야 투자는 여성의 무임금 가사노동 부담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고, 실제로 식수나 장작을 구해오는 시간감소에 일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ibid:125).⁷⁾

(3) 세부목표 5.5/5.c: 여성의 목소리, 리더십과 참여

5.5 정치, 경제, 공공생활의 모든 의사결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동등한 리더십 기회 보장

- 제안된 지표 1: 지역 정부/의회 내 여성의원 비율
- 제안된 지표 2: 가내 물건 구입 시, 자신의 건강문제 관련, 또는 친척 방문 등과 관련하여 가정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여성의 비율

7)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에 의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에 해당하는 25개국 데이터 분석에서 성인 여성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에 전체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600만 시간,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김은경 외 2014:166).

5.c 모든 수준에서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및 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건전한 정책과 강제력 있는 법안의 채택과 강화

- 제안된 지표 1: 성평등 달성을 위한 정책 여부와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추후 확정할 예정임
- 제안된 지표 2: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자원배분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의 비율

MDGs는 목표3,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평가하는 세부 지표 3가지 중 한가지로 “의회에서의 여성의원 비율”을 제시하여 성평등 달성에 있어 여성 리더십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의회에 진출한 여성의원의 비율만으로 성평등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으며, 진정한 여성권리 향상과 성평등 달성을 위해서는 의회를 비롯한 정치 및 공공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민간기업, 사회와 경제 영역 전반에서 여성의 목소리와 참여, 리더십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구조와 문화의 개혁이 중요하다(UN Women 2013:30).

북경행동강령 이후 많은 국가들이 여성권리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법제도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장관급 고위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7%에 불과하고, 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20%이며, 기업의 관리직과 입법기관 고위 직원 중 여성 비율은 아프리카에서 21%, 그리고 남미에서 37%에 그치고 있다. 민간기업 고위직에의 여성 진출은 특별히 더 열악한데, 2014년 세계 500대 기업 중 여성이 최고위직에 진출한 비율은 4%에 불과하다(UNSD 2015).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통계에 의하면 2002-2012년 동안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분야에 대한 DAC 회원국들의 원조금액은 USD 80억불에서 USD 240억불로 3배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지원 분야 중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리더십 분야 대상으로 한 지원 금액은 전체총액의 0.05%인 USD 12억불에 불과하다(OECD 2014b). 가정과 기업을 포함한 민간분야와 공공영역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와 리더십 강화는 향후 SDGs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4) 범분야 이슈로서의 젠더

앞서 언급하였듯이 빈곤, 보건, 교육,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은 동일한 요구와 단일한 필요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위치와 집단에 따라 다양한 제도의 개선과 개발 요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Post-2015 SDGs 체제에서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가 독자목표로서 뿐만 아니라 다른 10개 개발 분야의 세부 목표로서 포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목표 설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평등과 역량강화를 다양한 분야에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지표 설정과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UNSC가 2015년 3월에 후보군으로 제시한 10개 목표의 젠더 지표들을 보면,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분리통계를 명시하지 않는 지표, 그리고 세부 분야에서 여성의 현실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지표들이 많다. 가령 SDGs 세부목표 11.2는 “2030년까지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동 등 취약계층의 특별한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대중교통 확대 및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관련된 UNSC의 후보지표에 성별, 연령별, 특수 집단에 대한 분리 통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SDGs 세부목표 2.3는 “2030년까지 여성, 원주민, 가족농, 유목민, 어부 등 소규모 식량생산자의 생산성과 임금을 두 배로 증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에 대한 UNSC의 후보지표는 “단위 면적(ha)당 농업생산가치(USD/ha로 측정, 농지면적 기준 2/5 이하 및 여성 소농 통계 분류)” 단 하나이다.

SDGs 17개 목표의 효과적인 실행과 달성을 위해 여성계가 제시한 지표와 성별분리 자료의 검토는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아래 지표들은 UN Women이 성평등과 역량강화를 위해 제시한 대안 지표들로서, SDGs 1.2 빈곤퇴치, SDGs 2.3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SDGs 3. 보건증진, Goal 8.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포함한 SDGs 17개 전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하다(UN Women 2013).

- 주거지 소유권의 성별 비율
- 영양부족 인구층의 성별 비율
- 65세 이상 연금 수령자의 성별 비율
- 취약한 근로조건, 저임금 노동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성별 비율
- 농촌지역에서 성별 토지 소유 비율
- 신용대출, 금융권 서비스에 접근가능하고, 금융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인구의 성별 비율
- 고등교육의 과학, 엔지니어, 기술, 건설 분야에 등록하고 졸업한 여학생의 비율
- 호흡기 질병에 노출된 감염자의 성별 비율
- 5세 이하 영유아 사망자의 성별 비율
- 첫아이 출산 시 산모의 나이

3. 목표체계 평가

MDGs와 비교해 볼 때 Post-2015 SDGs의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목표 선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개선점은 (1) 성차별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제도와 관습의 개혁이 반영된 것과 (2) 여성계에서 여성권리강화와 성평등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지적되어온 여성대상폭력, 성차별적 악습철폐, 무임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의 성별 공동책무성 강조, 의회 등 공적 영역 뿐 아니라 가정과 민간기업 등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의 의사결정권과 참여 보장, 성적·재생산 권리 보장, 경제적 권리와 자원への 접근성 개선이 독자목표로 선정된 것이다.

UN Women, OECD DAC 젠더넷(GENDERNET: 이하 OECD 젠더넷) 등 국제기구와 여성주요그룹(Women's Major Group)⁸⁾ 등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사회문화적 구조와 성차별적 원인의 개혁이 반영된 SDGs 독자목표와 범분야 젠더 이슈 반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여성계가 노력하였던 북경행동강령과 Post-2015 성평등 목표의 통합, 그리고 북경행동강령에서 제시되었던 주요 젠더 이슈들이 SDGs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4:55, 246). 생애주기를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평화/안보와 여성, 시장과 무역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 여성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권 등 북경행동강령에서 제시된 목표들은 향후 SDGs 목표 달성 노력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려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SDGs 목표선정 이후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해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하고 평가 가능한 지표의 개발이다. UNSC는 2015년 3월과 5월에 세부목표별로 각각 2개와 1개의 후보지표를 제시한바 있다. 최종 지표가 선정되기까지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한 가지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성별분리자료의 구축과 정보 보급, 그리고 자료 분석을 위한 역량강화 노력이다.

2011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HLF-4)는 기존의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개발효과성이란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정책,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입 방식을 의미하며, 원조를 넘어서(beyond aid)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 영역인 무역과 투자정책, 농업, 노동과 이주, 인구와 여성, 환경 등 다양한 정책들 간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

8) 여성주요그룹(Women's Major Group, WMG)은 1992년 UN 환경과 개발회의에 대한 후속으로 결성된 9개 주요 집단 중 하나로, WMG는 정부 간 프로세스에 기여할 뿐 아니라 Post-2015 개발의제 및 UN 환경프로그램(UNEP)를 비롯한 Rio process에 기여하고 있다. WMG 회원기관은 FEMNET, APWLD, AWID, WECF, GFC, DAWN 등이 있다(김은경 외 2014:62).

는 접근방식이다(김은경 외 2011:49).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목표와 관련하여 부산 개발원조총회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부산 총회에서 “양성평등 및 개발에 관한 부산 공동 행동계획(Busan Joint Action Plan on Gender Equality and Development)” 채택을 통해 개발 결과 달성을 위한 성별분리 자료 수집 및 활용 역량을 지원하는 “양성평등을 위한 통계역량강화(EDGE)” 이니셔티브가 출범하였기 때문이다(OECD 2014a:10,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11.11.29).

MDGs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정보의 결핍, 성별분리 데이터의 부재, 그리고 여성대상폭력과 가사노동 등 주요한 지표의 부재이다(김은경 외 2014:236). 향후 SDGs 체제 실행과 효과적인 성과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목표, 세부 지표의 확정과 동시에 책임성 있는 모니터링 기구와 방법론 합의, 성별분리 통계 및 젠더 지표 개발이 필수적이다.

III. 우리의 대응 전략 및 기여방안

1.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및 대응방안

- (1) 금년은 MDGs가 종료되고 새롭게 Post-2015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가 선정되는 해인 동시에 북경행동강령 채택 20주년,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15주년 등 성평등과 여성권리 관련 국제결의와 목표들이 평가되고 재정립되는 중요한 해이다.

UN ECOSOC,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그리고 OECD 젠더넷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MDGs, 북경행동강령, UNSC 1325호의 실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얻은 교훈과 도전이 무엇인지, 효과적인 접근 방식과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실패한 방식은 무엇인지, 각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모범사례(best practice)는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공유함으로써 Post-2015 SDGs에서 실질적인 성평등과 여성권리,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국제사회 노력에 발맞추어 한국 ODA 전략에서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관련 활동의 성과와 도전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Post-2015 SDGs 체제에서 보다 효과적인 ODA 성주류화 전략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OECD 젠더넷은 2014년 DAC 회원국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분야에서 각국이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과제들을 제시한 바 있다. OECD DAC 29개 회

원국이 현재 성평등과 여성권리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야는 여성과 여아 대상 폭력, 평화/안보와 여성, 여아 교육, 경제분야 여성역량강화 등이다(OECD 2014a).

한국의 ODA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무상원조와 수출입은행에서 집행하고 있는 유상원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다양한 관계 부처에서 ODA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성주류화 ODA 사업 집행을 위해 SDGs 성평등과 여성·여아 역량강화의 주요 3대 핵심이슈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력과, 여성권리 향상과 역량강화 성과를 모니터링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체계 마련을 제안한다.

- (3) MDGs 목표 달성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로 지적된 정보의 결핍, 성별분리통계의 부재, 그리고 여성폭력 등 주요 젠더 지표의 부족은 SDGs 목표 실행과 달성에 있어서 계속적인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개발 분야에서 결과중심의 사업관리와 성과 측정은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이며, 많은 국제기구와 원조기관들은 효과적인 지표개발과 모니터링 방법론 개발, 그리고 담당자들의 역량강화에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 개발원조총회의 혁신적 EDGE 이니셔티브를 실행하고 개발효과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별 분리통계 구축 및 자료 수집, 성과측정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에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2. KOICA의 대응방안

- (1) 2002-2012년 사이에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분야에 대한 OECD DAC 회원국의 지원금은 세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은 교육과 보건분야에 집중되었다. 많은 국가들이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2007년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분야 지원 금액은 변화가 없으며, 전체 양자 지원 금액(bilateral aid)의 2%만이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되었다(OECD, 2014a). 또한 SDGs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서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여성폭력, 평화/안보와 여성, 여성의 리더십과 참여에 대한 원조기관의 지원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A life for dignity for all”을 통해 MDGs의 목표들이 Post-2015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MDGs에서 달성되지 못한 과제와 여성, 어린이, 노약자, 소수민족, 이민자, 장애인, 농촌지역과 도시 빈민가의 빈곤층 등 가장 열악하고 MDGs 성과가 미치지 않은 집단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UN 2013:9).

MDGs에서 달성하지 못한 과제들과 함께, SDGs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달성을 위해 여성폭력,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 등 성평등과 여성권리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이제까지 개발지원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분야에 대한 KOICA의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지원을 제안한다.

- (2) OECD DAC 29개 회원국들은 2006년 이후에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관심과 함께 법적, 제도적 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KOICA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해 왔다(OECD 2014a:8). KOICA는 2010년 OECD DAC 가입 이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성평등 목표를 통합하기 위해 관련 법, 정책, 예산 마련 등 법과 제도적인 성평등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왔으며, 성인지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국제개발분야에서 성주류화 전략 실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

향후 Post-2015 SDGs 체제 하에서의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목표 달성을 위한 KOICA의 과제는 성평등과 젠더 이슈를 주요 관심 주제로 부각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와 자원의 배분을 통해 실행하고 성과를 강화하는 것이다. OECD 젠더마커 통계에 의하면 코이카의 성주류화 사업은 2014년 현재 29%인데, 이중에서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사업의 1차 목표(principal)로 하는 젠더마커 2 사업은 전체의 4%에 불과하다.⁹⁾ 범분야 이슈로서 성주류화 전략의 실행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 수행과 사업 집행 노력을 제안한다.

- (3)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이후에 세계는 원조에서 개발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새로운 개발재원의 발굴과 시민사회, 기업, 수원국, 국제기구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향후 민간기업, 시민사회, 수원국 등 다양한 파트너 기관과 협력 시 KOICA 내부에 구축된 양성평등사업 정보의 대내외 공유와 확산, 젠더 관점의 사업 반영과 교육·훈련을 통해 성평등한 개발원조사업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9) KOICA 내부 젠더마커 잠정통계 자료

참고문헌

- 김은경 · 장은하 · 이미정 · 김영택 · 곽서희 · 조영숙, 2014, 『Post-2015 개발체제에서 젠더의제 분석』,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경 · 김영혜 · 윤현주 · 김정수 · 이태주 · 조영숙, 2011, 『제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논의주제에 대한 젠더관점의 의제 개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신혜수, 2010,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선택의정서에 의한 여성인권보호.” 『이화젠더법학 창간호』.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11.11.29, “부산총회 양성평등 특별세션,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촉구.”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11418&tableName=TYPE_DATABOARD&seqno=338619, 2015.06.30.
-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한국어판.
- 한국여성단체연합, 2014, 『베이징+20와 Post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 심포지엄 자료집 (2014.11.11, 서울).
- Ferrant, Gaelle., Nowacka, Keiko., and Thim, Annelise. 2015. “Living up to Beijing’s vision of gender equality: Social norms and transformative change.” Paris: OECD Development Centre.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4a, “From ambition to results: Delivering on gender equality in donor institutions,” http://www.oecd.org/dac/gender-development/From_ambition_to_results.pdf, 검색일: 2015.05.29
- _____. 2014b, “Financing the unfinished business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s: priorities for the post-2015 framework.”
- OECD Development Centre, 2010, “Gender inequality and the MDGs: What are the missing dimensions?,” Paris: OECD.
- Open Working Group., 2014, “Open Working Group propos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focussdgs.html>, 검색일: 2015.04.24.
- United Nations, 2012, “The Future We Want,” http://www.un.org/disabilities/documents/rio20_outcome_document_complete.pdf, 검색일: 2015.05.15.
- _____. 2013, “A life of dignity for all: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advancing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 A/68/202.
- _____. 2014,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http://www.un.org/disabilities/documents/reports/SG_Synthesis_Report_Road_to_Dignity_by_2030.pdf, 검색일: 2015.05.15.

- UN ECOSOC. 2012. "Gender Statistic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CN.3/2013/10.
- _____. 2014. "Review and appraisal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and the outcomes of the twenty-third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E/CN.6/2015/3.
- UN Women. 2012. "The Future Women Want: A Vi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ll." <http://www.unwomen.org/~media/Headquarters/Media/Publications/en/TheFutureWomenWant.pdf>, 검색일: 2015.05.15.
- _____. 2013. "A Transformative Stand-alone Goals on Achieving Gender Equality, Women's Rights and Women's Empowerment: Imperatives and Key Components." <http://www.unwomen.org/en/what-we-do/~media/AC04A69BF6AE48C1A23DECAEED24A452.ashx>, 검색일: 2015.05.15.
- _____. 2014a. "The role of women in rural development, food production and poverty eradication." <http://www.unwomen.org/en/news/in-focus/rural-women-food-poverty/2013>, 검색일: 2015.06.20.
- _____. 2014b.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ISBN:978-1-936291-93-9).
- UN Statistical Commission. 2015. "Technical Report by the Bureau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on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an indicator framework for the goals and targets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6754Technical%20report%20of%20the%20UNSC%20Bureau%20\(final\).pdf](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6754Technical%20report%20of%20the%20UNSC%20Bureau%20(final).pdf), 검색일: 2015.05.28.
- UN Statistics Division. 2015. "The World's Women 2015: At a Glance."
- UN Technical Support Team. 2014. "Compendium of TST Issues Brief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554TST_compendium_issues_briefs_rev1610.pdf, 검색일: 2015.05.28.

〈Annex 1〉 북경행동강령 12개 주요 관심분야와 전략적 목표¹⁰⁾

A. 여성과 빈곤

- A.1 빈곤여성의 요구와 노력을 해결하는 거시경제 전략과 개발목표를 평가하고, 채택하고 유지한다.
- A.2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와 접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법과 행정적 관행을 개선한다.
- A.3 여성이 저축, 신용대출 제도와 기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A.4 빈곤의 여성화를 해결하기 위한 성인지 기반 방법론을 개발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B. 여성의 교육과 훈련

- B.1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확실하게 한다.
- B.2 여성의 문맹을 근절한다.
- B.3 직업훈련, 과학과 기술,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증진시킨다.
- B.4 차별이 없는 (반차별적인) 교육과 훈련을 개발한다.
- B.5 교육 개혁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할당하고 이행을 모니터링 한다.
- B.6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평생 교육과 훈련을 증진한다.

C. 여성과 건강

- C.1 생애 주기를 통해 적절하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 정보와 관련 서비스에 여성이 접근 가능하게 한다.
- C.2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C.3 성적 접촉 감염 질병, HIV/AIDS 그리고 성과 재생산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인지 이니셔티브에 착수한다.
- C.4 여성의 건강에 대한 연구를 증진하고 정보를 확산시킨다.
- C.5 여성 건강을 위한 자원을 확대하고 후속 조치들을 모니터링 한다.

D. 여성에 대한 폭력

- D.1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통합적 조치를 취한다.
- D.2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예방조치의 효과에 대해 연구한다.
- D.3 여성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와 인신매매로 인한 폭력의 희생자를 돕는다.

E. 여성과 무력분쟁

- E.1 갈등해결의 의사결정 수준에 여성참여를 늘리고, 군사적 그리고 다른 갈등 상황이나 외국의 점령 하에 있는 여성을 보호한다.
- E.2 과도한 군비 지출을 축소하고 무기를 통제한다.
- E.3 비폭력 형태의 갈등해결을 증진하며, 갈등 상황에서 인권 침해 발생을 감소시킨다.
- E.4 평화 문화를 촉진하는데 여성의 기여를 늘린다.

10) 한국여성단체연합(2014:734-736)

E.5 난민여성,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피난민 여성과 자국내 피난민 여성들에 대한 보호, 도움과 훈련을 제공한다.

E.6 식민지와 비자치 영역의 여성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F. 여성과 경제

F.1 고용에의 접근, 적절한 노동조건 그리고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를 포함한 여성의 경제적 권리와 독립을 증진한다.

F.2 자원, 고용, 시장과 무역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을 촉진한다.

F.3 여성, 특히 저임금 여성들에게 사업 서비스, 훈련과 시장에 대한 접근, 정보와 기술을 제공한다.

F.4 여성의 경제적 능력과 상업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F.5 직종 분리와 고용에서의 모든 종류의 차별을 제거한다.

F.6 남녀의 일과 가정에 대한 책임의 조화를 증진한다.

G. 권력과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G.1 권력구조와 의사결정에 여성의 동등한 접근과 완전한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G.2 의사결정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여성의 능력을 증진시킨다.

H. 여성발전을 위한 제도 기구

H.1 여성발전을 위한 별도의 국가 기구를 만들거나 정부내 기구를 강화시킨다.

H.2 성인지 관점을 입법, 공공정책, 프로그램과 사업에 통합한다.

H.3 계획과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통계와 정보를 생산하고 보급한다.

I. 여성 인권

I.1 모든 인권 제도의 완전한 이행, 특히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이행을 통해 여성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한다.

I.2 법과 법 이행상의 평등과 차별금지를 보장한다.

I.3 법률 문해력을 확보한다.

J. 여성과 미디어

J.1 미디어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 그리고 그것을 통한 표현과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와 접근을 증진시킨다.

J.2 미디어에서 균형 잡히고 성별 전형화(non-stereotyped) 되지 않은 여성의 모습을 확대한다.

K. 여성과 환경

K.1 환경 관련 결정의 모든 수준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K.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한다.

K.3 국가, 지역, 국제 수준에서 개발과 환경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제도를 강화하고 확립한다.

L. 여아(The girl child)

- L.1 여아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한다.
- L.2 여아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적 태도와 관행을 철폐한다.
- L.3 여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여아의 요구와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 L.4 교육, 기술 개발과 훈련에서 여아에 대한 차별을 철폐한다.
- L.5 건강과 영양에서 여아들이 받는 차별을 철폐한다.
- L.6 아동노동의 경제적 착취를 철폐하고 일터에서 여자 청소년을 보호한다.
- L.7 여아에 대한 폭력을 근절한다.
- L.8 여아의 사회, 경제, 정치 생활에 대한 참여와 의식을 높인다.
- L.9 여아의 지위 향상을 위해 가족의 역할을 강화한다.

